

#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구성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연구

**이 명 현**  
(경북대학교)

**박 경 일\***  
(동국대학교)

**강 대 선**  
(위덕대학교)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용어:** 기본소득, 무조건성, 충분성, AHP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연구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27-B00432).

\* 교신저자 : 박경일, 동국대학교(pki@dongguk.ac.kr)

■ 투고일: 2011.9.20    ■ 수정일: 2011.11.28    ■ 게재확정일: 2011.12.7

## I. 서론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금융주도축적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는 포드주의 고용모델에 기반 한 사회민주주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김형기, 2007; Opielka, 2010). 완전고용 및 임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모델로 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은 노동자의 소득안정 및 실질소득 보장, 노동활동의 개인적 자유, 사회적 연대 등의 규범적 측면에서도, 또 계급관계, 재정 문제 등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심화된 글로벌 자본주의하의 고용이 개인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과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이명현, 2007). 더욱이 포드주의 고용모델은 시민권의 토대로서 화폐로 환산되어 교환되는 임노동 영역의 일자리만을 가치창출의 유의미한 노동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임노동자의 신분을 유지 못하는 자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임금과 비임금, 자율적 노동의 증가 등 변화하는 현실의 노동시장 성격을 인정하고, 포섭하는 보편적 소득보장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생산·복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노동을 가치화할 수 있는 보편적 소득보장정책 구상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한 국가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곧 무조건성에 바탕하여 기본욕구(basic need)의 충족에 적합한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Altenkamp, 2010: 1). 수급자격의 무조건성은 소득지원 조건으로서 노동의 지위, 고용기록, 노동의욕, 혼인의 지위 등 고용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Fitzpatrick, 1999: 44). 기본소득이 소득지원과 노동의욕 유무 및 임노동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빈곤으로부터 오는 인간적 존엄성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대안적 사회정책 프로젝트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이명현·강대선, 2011). 그러나 근로유무를 묻지 않고 소득을 보장하므로, 노동에 대한 도덕적 훼손, 노동과 노동의무에 대한 비 인센티브 효과, 납세자 및 일반시민들의 반대, 기여 없는 자에 대해 기여하는 자의 무가치한 상호호혜성이 수용가능한가 등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Lipietz, 1992; Wilson, 2004; 이명현, 2007; Opielka, 2010). 또한 막대한 재정소요(GDP의 20~30%)로 인하여 매력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유토피

아직 정책구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명현, 2007: 149).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모든 정책목표에 걸친 기본소득의 광범위한 정책효과 및 장점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비판과 단점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Fitzpatrick, 1999; Miller, 2008; Standing, 2009). 왜냐하면 개별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직접효과는 빈곤의 감소 등 평등 및 소득지원효과에 한정될 수 있지만, 국가개입의 최소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적 선택 및 자율성의 증가라는 자유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Standing, 2009)<sup>1)</sup>. 따라서 점차 짧아지는 고용기간과 길어지는 은퇴 후의 삶 등 상황과 관점에 따라,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비전을 넘어서면서도 자본주의의 좌파 우파 모두로부터 국민적 합의와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중심은 유럽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1986년에 설립된 유럽의 기본소득 연구자 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an Network)이다. 현재 BIEN은 2004년부터 세계적인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기본소득이 소개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경제철학 영역(곽노완, 2007), 경제학 영역(강남훈, 2010), 사회복지학 영역(이명현, 2006, 2007; 서정희·조광자, 2008; 백승호, 2010), 법학 영역(박홍규, 2008) 등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 걸쳐서 횡단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빈곤완화 및 재분배 효과와 재원조달 방향(김교성, 2009), 보편주의적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의 우월성과 인구대상에 따른 단계별 전략(백승호, 2010), 기본소득 도입의 우선순위 설정 요인 연구(이명현·강대선, 2011)에까지 그 영역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 구상이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소득보장 구상은 1950년대에 소개된 적이 있고, 2004년에는 국회에서 도입과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다(菊地英明, 2006: 5). 특히 2010년에는 일본과 한국 모두 BIEN에 회원 조직으로 가입하였고 양국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 연구보고와 발표를 시행함으로써 지구화 또는 동아시아 기본소득 연구의 기초자료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1) 이밖에도 빈곤의 감소로 인한 범죄예방, 국가개입의 최소화에 따른 재정측면에서의 비용효과 등도 실증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소득보장 체제에 대한 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양국 모두에서 기본소득 구상·가설·과제와 논쟁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적 요소에 대한 비교검토와 이에 기반 한 실현 가능한 방향설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구상과 논의의 검토를 통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과 이와 관련한 전략요소 및 대안들을 설정하고, 둘째, 각 기준항목에 대한 한일 기본소득 전문가의 중요도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향후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기본소득의 다양성과 쟁점

### 1. 개념적 다양성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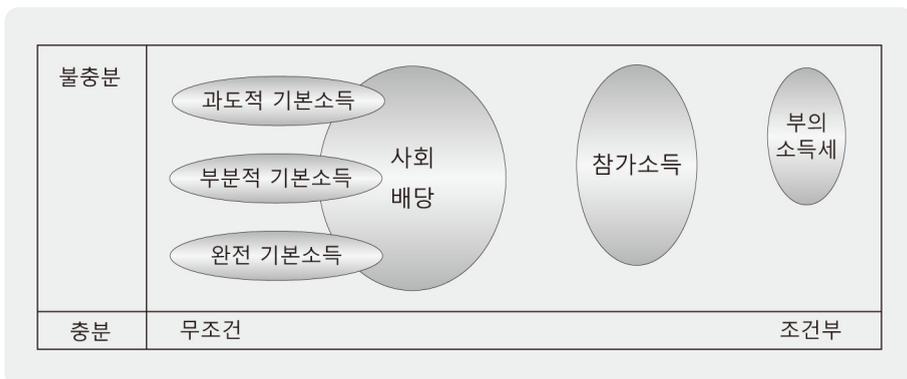
기본소득 구상은 임노동시장에의 참가를 시민권의 기초로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탈노동중심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윤리 또는 산업주의를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워크페어와 규범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한다(이명현, 2006: 63). 현재 기본소득관련 논의와 구상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좌·우파로부터도 각기의 입장과 관여하에 상관 없이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ipping, 2008).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 및 우파인 Friedman(1975)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NIT)는 기본소득과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사회주의나 복지국가가가 공유하는 산업주의적 가치관과 노동소외와 환경파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비판적이기도 하다(Offe, 1996). 따라서 기본소득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특성은 급부수준과 수급자격의 결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의 급부수준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본욕구를 고려하여 급부수준의 결정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 주로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설정과 재원확보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Fitzpatrick(1999)은 무조건적인 자격부여에 기반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지원의 수준이라는 충분성 관점에 따라 완전 기본소득과

부분적 기본소득, 과도적 기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1). 둘째, 지급조건에 엄격성 차이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급부되는 협의의 기본소득도 가능한 반면, 자발적 노동(자원봉사)의 참여여부나 생활 곤란의 정도 등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급부하는 참가소득, 부의 소득세도 기본소득이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Offe, 1996; Gorz, 1999; Van Parijjs, 2004). 급부수준이 유사한 것처럼 보여도 배경이 되는 논리나 급부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급부목적의 스펙트럼에는 주로 노동에 대한 도덕적 관점에서 주로 구분된다(Opielka, 2010).

한편, 수정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조합하는 형태이다. Atkinson(1995)은 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18세 이상의 시민에 대하여 주당 18.28 파운드의 소득보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수급기간을 한정된 상태로 급부(Vertical Account)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일정시기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교육, 육아, 케어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공공부조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Offe, 1997: 100-101). 셋째는 로마클럽(Rome Club)의 다층노동 모델로서 수급자격에 협의의 노동시장 참가보다 유연한 수급조건을 부과하는 형태이다(조정재, 2007).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은 이와 같이 완전한 무조건이 아니라, 통상적인 노동시장 참가, 퇴직연령 도달, 산재인정 등을 포함하여 케어, 육아, 자원봉사활동 등의

그림 1. 기본소득의 개념도



자료: Fitzpatrick(1999).

참가도 수급조건이 될 수도 있다. Beck(2000)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외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무임노동(unpaid work)에 대한 시민머니(civic money)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급부수준의 충분성과 비용효과성, 지급기준의 엄격성의 수준에 따라 개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의 탈 상품화 및 임금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사회에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기본소득의 쟁점

기본소득에 대한 대립적 관점을 중심으로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이 실현가능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실천수단으로 검토되기 시작하면 이데올로기적인 불일치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기본소득을 당연하게 지지하는 정치연합이 없고, 또 선거에서 지지 세력도 거의 없는 이유가 이 같은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설혹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주요 정당이 선거에서 지지를 얻어도 단순한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영국 의원 임기의 2회에 해당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1946년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는 기본소득을 단독으로 논의하지 않고 포괄적인 정책패키지의 일부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연합 속에 어떻게 기본소득을 침투시켜 정치연합으로 재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적 논의가 수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원리에 관한 논의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08년 이전의 국가연금, 1948년 이전의 무료의료실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단순히 정치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정의로운 방향에서 비껴난 것일 것이다.

둘째, 비용 효과성과 관련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부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그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역으로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분적 기본소득 급부액 추계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보족적 가산이 덧붙여지지만, 개인당 45~61파운드 정도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당 30~5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tzpatrick, 1999; 강남훈, 2010). 이 수준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고, 오히려 중·고소득 집단의 구매력만 올려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려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는 비공식섹터에서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자와 공식섹터에서 임금을 벌어들이는 자간의 사회적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현재 열거할 수 있는 모든 급부시스템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기본소득이 훈육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분열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본소득옹호자가 기본소득이 사회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되면, 비판자도 기본소득이 모든 환자를 반드시 미이라로 만드는 사회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배 및 재분배효과와 관련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안의 재분배 효과를 추계하는 것이다. 어느 제안의 분배 효과가 가장 클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100인으로 구성된 사회에 희망대로 분배할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옹호입장에서 가장 쉽고 공평한 분배방법은 전원에게 10만원씩을 개인의 몫으로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급부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굶주림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케이크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별적 분배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선별적 분배방법을 위해서는 우선 자산조사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미지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필요판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로 인해 빈곤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다. 게다가 선별주의에서는 정해진 대상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정단위가 세대로 되어있으면 여성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정의되고, 이에 따라 여성은 급부 대상으로 포착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더욱이 자산조사 급부는 빈곤의 탓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방해한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수입이 올라도 세액이 감액되

지 않으므로 덜의 유혹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출의 투명성 측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장점은 광범위한 비용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이고, 다른 시스템은 이점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비용이 은폐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넷째, 무임승차 문제이다. 사실상 기존 사회제 대부분은 현재 노동의 산물보다는 자연과 과거 경제로부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임 승차자는 현존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Offe는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에게 임금의 대가로써 노동을 파는 것 이외에 자신의 노동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도덕적 규칙은, 고용 없이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기대 - 단지 임금 없이 - 할 수 있다는 것이다(Offe, 1997: 102). 기본소득 지지자의 대다수는 기본소득 도입이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 도입은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로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나태한 자가 될 사적 자유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는 시민권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Habermas는 개인적 자율과 공공적 자율을 구별하며, 개인적 자율이 보장될 때에만 한 국가의 시민은 민주적 참가권에 의해 보장된 공공적 자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Habermas, 1992: 492). 이를 받아들이면, 기본소득은 최소한 사적 자율을 보장하므로 공공적 자율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자율을 보장받은 개인이 필연적으로 공공적 자율로 향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사람들은 사적 자유의 향수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田村哲樹, 2008: 92).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 옹호논리는 개인과 국가간 상호호혜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우리 사회가 자유사회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자유의 향유에 어느 정도의 남용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tzpatrick(1999)은 “많은 무임 승차자가 자유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사회가 옹호하는 가치의 대부분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결과는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가치가 옹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확실히 기본소득도입은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을 받으려는 자를 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로 각 개인이 자유롭게 선을 추구할 권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제도 악용자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설계를 위한 기본소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Ackerman & Alstott, 2006: 51)는 지적인 자유의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악용자는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노동만을 공헌의 조건으로 하는 호혜성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상호호혜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헌도 필요하다. Gutmann과 Thompson(1996)은 기본소득을 배척하고 공정한 워크페어를 주장하는데, 정책의 공정성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시민에게만 노동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민의 노동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 충분한 노동임금 보장, 충분한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보와 같은 지원이 정부의 의무이자 공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자유사회에서 시민측의 무임승차만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공헌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공헌 유무에 대해 비판할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Gutmann과 Thompson(1996)이 제시한 세 가지 의무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가이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실업률 상승, 비정규직 증가 및 근로빈곤층 발생 등의 현상은 정부의 공헌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의 공헌의무를 다할 수 없는 이상 시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 재정원천, 무임승차를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고 옹호적 관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면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Ⅲ. 한일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

#### 1. 한국의 기본소득 구상

본격적인 기본소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사회복지학 영역(이명현, 2006; 2007), 사회경제철학 영역(곽노완, 2007), 법학영역(박홍규, 2008),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의 학제적 영역(강남훈 외, 2009)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적극적으로 강화된 워크페어(workfare) 개혁

만으로는 사회적 격차와 배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소득보장 체제로서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정책과 제도가 융합되고 내실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명현, 2006: 71-72). 나아가 유럽의 기본소득 동향으로서 스웨덴의 근로안식년 제도와 영국의 무조건적 시민연금 제도를 각각 수정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고통자 버전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정책적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이 대안적 사회체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곧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체제 구상의 실험적 재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명현, 2007: 164). 이명현(2006, 2007)의 연구는 현재 스웨덴과 영국에서 워크 페어 사회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실험들을 기본소득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현실적 제약과 가능성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교성(2009)은 우리나라 탈빈곤정책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기본소득의 이론적 논의와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빈곤완화효과와 재분배효과 분석,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교성(2009)은 기본소득 유형을 4개로 제시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빈곤율이 1.4%까지 떨어진다는 추계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효과에 초점을 맞춘 매우 시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의 구상의 한계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경제적, 제도적 상황 요인에 따른 전략 수립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승호(2010)는 기본소득을 정률과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모델, 차등과세기본소득 모델로 구분한 후, 아동, 여성, 노인 및 이들을 합한 전체대상의 소득재분배와 불평등감소효과를 분리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보편주의적인 기본소득제도가 현행사회복지시스템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구대상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시하는 단계별 기본소득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원천으로 기본소득세의 신설이라는 전제로서 출발하고 있어 기본소득세의 신설이 실현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고, 우선순위의 결정에 기술적인 불평등감소 효과만으로 기본소득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박홍규(2008)는 1792년 Paine의 인권(Right of Man)에서부터 동양의 균전제, 20세기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Tinbergen과 Friedman, Tobin, 1980년대의 영국 기본소

득 조사그룹의 Parker 및 현재의 기본소득 네트워크(BIEN)에 이르는 기본소득 구상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을 구상한 생태철학자 Gorz의 논의를 수용하여, 현재의 워크페어적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들면서 인권의 개념을 경제적 소득권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박흥규, 2008). 이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법적·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권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책적 현실성을 확장해 주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철학 분양에서는 Parijs 및 자율주의자 Negri 등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자본주의적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진보적 기본소득인 사회연대소득으로 전환할 조건이 한국과 현대 자본주의체제에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도 있다. 이 관점은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 및 필요에 따른 분배로 구분되어 있는 Marx의 코뮌주의 2단계론을 노동성과+필요에 따른 분배로 통합, 일원화하는 새로운 21세기 코뮌주의와 연계된다. 21세기 새로운 코뮌주의론은 Marx의 제1단계 코뮌주의의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가 현대 사회복지국가의 복지제도에 못 미치며, 제2단계 코뮌주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의 경제적 산출을 감퇴시키므로 지속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 및 필요에 따른 분배를 50:50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코뮌주의 분배원리는 사실상 노동성과 40%+불로소득 및 투기소득 60%의 분배원리를 가지는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코뮌주의 사회에서 50%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곧 진보적인 기본소득 내지 사회연대소득이라는 것이다(곽노완, 2007: 205-212).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독일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진보적인 기본소득 내지 사회연대 소득의 현실적 비전을 경제철학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성과도 있다. 이 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상이한 기본소득 모델들 중에서 어떤 기본소득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놓여 있다(곽노완, 2008).

최근에 경제학·철학·노동운동을 가로질러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초의 학제적인 연구성과도 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 고용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혁신하여, 노동자와 실업자·여성·생태·노령자·청소년·소수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끈으로서 기

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강남훈 외, 2009: 32-38). 나아가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 모델에는 무상교육·무상의료가 포함되고 있고, 39세 이하에게는 1인당 연 400만원, 40~54세 사회구성원에게는 1인당 연 600만원, 55~64세의 사회구성원에게는 1인당 연 800만원, 65세 이상에게는 1인당 연 90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GDP 성장률만큼 지급액을 인상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재원은 총 290조원에 달하는데, 이 재원은 주로 이자·배당·지대 등 불로소득과 증권양도차익 등 투기소득, 토지세 및 환경세를 강화하거나 신설하여 조달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미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소득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안지구화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시도로도 평가되고 있다.

## 2. 일본의 기본소득 구상

일본의 기본소득 구상은 규범적·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현실적 방향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기본소득론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원천을 둘러싼 구상이다. 小澤修司(2002)는 Gortz의 탈 생산주의적 기본소득 옹호론을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기본소득 8만엔에 인구 총수를 곱하여 총 비용을 추산하였다. 小澤修司(2002)는 비용충당을 위해 현행 사회보장급부비로부터 기본소득에 의해 대체가능한 현금 급부를 모두 폐지하고, 부족분을 추가적인 채원수당에 의해 지급하는 방향과,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기본소득 총액을 정률 소득세율로 추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후자의 방향에 기반하여 몇 가지 모델 세대의 취득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대다수 세대가 현재보다 개선 내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세율은 51.6%를 제시하였고, 후에 과세 기준의 수정 등을 조건으로 약 45%로 수정하였다. 浦川邦夫(2007)는 Atkinson(1995) 모델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수준과 이에 따른 소득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浦川邦夫(2007)는 완전기본

소득(생활보호기준 100%), 부분기본소득(생활보호기준 75%)을 도입할 경우에 세율 상승에 의한 노동공급량의 변화 즉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어느 정도로 상정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히 하려는 연구이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완전기본소득에 필요한 세율은 50%를 초과하고, 부분기본소득은 40%로 추산되었다. 또 기본소득을 위한 세율은 정률세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노동공급의 왜곡이 없는 공평성을 들고 있다. 中谷巖(2008)은 환급조건부 기본소득과 같이 소비세에 의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그는 모든 과세가 과세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문제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상품가치에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지불하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도 상품가격에 전가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과세부담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보다도 최종적인 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알기 쉽고 공평하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그는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영자들에게 비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장려하게 된다고 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中谷巖(2008)은 환부조건부 소비세와 같이 소비세 인상과 기본소득적인 무조건 급부와의 조합을 제안하였다. 中谷巖(2008)은 기본소득 급부로 용도를 한정된 특별 목적세로서의 소비세는 필요시마다 최저보증소득수준을 사회의 소비수준과 연동시킬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구매력의 정기적 제공이라는 정책이념을 체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소비세만으로 충분한 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다.

둘째, 시민권을 둘러싼 구상이다. 龜山俊明(2002)은 시민권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다. 전형적인 시민권론은 국적보유자로서 시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반대급부로써 시민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논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급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제도구상은 국가에 의해 그 국민에게 지불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권을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흔들릴 수 있다. 秋元美世(2008)는 시민권론 관점에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일본 헌법과 기본소득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점을 전개하고 있다. 實原隆志(2007)의 논고도 헌법과 기본소득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즉 일본국 헌법 제27조 1항의 근로의무와 제25조 생활보호와의 관계를 결부시킬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무조건 급부가 일본국 헌법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일본국 헌법은 무조건 급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구분되고 있다.

셋째, 자산복지와 보편수당을 둘러싼 구상이다. 齊藤純一(2001)은 기본소득과 기본자본(BC: Basic Capital)을 비교하면서, 급부형태의 차이는 도입 동기, 사상적 배경만이 아니라 해당 정책의 귀결에까지 큰 차이를 초래한다는 취지의 논쟁을 소개하였다. 그는 또한 최근 영미에서 그 동향을 볼 수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복지라는 사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의 논점은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소위 환경관리형, 기본 자본은 규율 훈련형이라는 권력의 형태에 각각 대응하고 있으며 자기결정 또는 가부장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각각의 형태가 우세하게 되어야 할 정책영역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최근에 금융교육을 초등교육 단계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기본자본이나 자산기반의 복지라는 사고는 이러한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도입되어야 하고, 민법적인 시민 사회의 원리도 이 경우에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호적에 더하여 사회 보장번호와 납세자 번호를 통합한 금융구좌를 신생아가 태어난 단계에서부터 제공하고, 국가로부터의 급부와 국가에 대한 조세는 모두 결제하게 한다는 구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 자본은 우리들이 현시점에서 내면화하고 있는 규범체계와도 충분히 합치하는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고, 기본소득은 우리들의 규범체계를 재검토하게 하는 좌표를 제공해 주는 정책구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자발성과 공동체주의를 둘러싼 구상이다. 元田厚生(2008)은 자연자원이나 생산수단의 자유주의적 전유가 윤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어떠한 해법을 지향하는 경우에 하나는 좌파 자유주의적인 보상을 조건으로서 전유(사유화)를 인정한다는 방향과 다른 하나는 만인의 공통소유(common ownership)로 가는 방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福土正博(2006)은 급진적 공동체주의에 의거하여 기본소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참가소득에 의해 각 개인이 사회에 참가하는 완전중사사회가 포스트 복지국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보편적 현물급부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 山森亮(2009)은 기본소득을 경찰이나 교육과 같은 보편적 현물급부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재나 준공공재에 대한 상식적인 이론에 의하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급부는 공공재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자체가 공공재라기보다는, 해당사회의 구성원이 해당 사회의 생산수준 중 일정 비율을 소비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향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것, 이로 인해 만민에게 부여하는 안심감 자체가 공공재로 간주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공공재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해석은 보편복지 논쟁에서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 3. 기본소득구상의 실현 가능성

한일 기본소득 구상에서 주요 논점이 된 주제들은 기본소득과 노동중심 패러다임, 기본소득과 고용, 전 지구적 기본소득과 국가적·지방적 기본소득, 생태주의, 경제적 실현 가능성, 워크페이어의 관계를 둘러싼 내용 들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양국 모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에서 지급되어야 할 1인당 급부액수와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한 구상 등 경제적 차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전개되고 있다. 두 번째, 시민권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전지구적 개인, 일국 내의 모든 개인, 일국 내의 특정 계층 등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한 수급자격 결정은 결국 정치적 선택에 의한 실현 가능성 영역에 대한 구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비용효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현실성·지속 가능성측면에서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논점들은 모두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인 급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기본소득형 소득보장은 무조건성이 필수적인 전제요소이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성은 단순히 수급자격의 조건철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부수준과 재원전략, 그리고 완전기본소득 선택에 우호적인 정책 등 정치경제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표 1.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	재정원천	재정확보측면에서의 조세제도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새로운 세목신설, 누진세 강화 등
	수급자격	인구학적 구분측면에서의 자격결정 - 특정대상에서 전 국민까지 -
	급부수준	지급되는 급부금의 수준 정도(최저생활의 보장)의 결정 -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60% 수준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개념 고려
	정책전략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책전략의 결정 - 신보수주의에서 초국가주의까지 -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전략요소로, 경제적 차원에서 재정원천과 급부수준, 정치적 차원에서 수급자격과 정책전략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제도적 요소와 관련된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IV.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초점은 기본소득의 원칙인 무조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 전략 요소 및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기준의사결정방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AHP 조사에서 설문대상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설문대상자가 기본소득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재영·임윤택, 2006).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가치대립이 분명한 연구주제일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결과를 출판한 연구자일 것, 또 BI 도입에 대하여 옹호적일 것, 한일 각각의 BIEN에 소속하여 활동할 것을 가장 중요한 설문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하나의 사회체제 구상으로 제기되는 단계이므로, 정책결정자인 관료나 직접적 수혜자인 국민들의 인식보다는 정책구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이 더욱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sup>2)</sup>.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한국연구자의 경우 우편조사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본연구자의 경우 주저자가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였다. 최종분석에는 한국 6명, 일본 4명 총 10명의 분석결과가 사용되었다.

---

2) 이러한 요인은 설문대상자의 충분한 수 확보에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AHP 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자의 응답은 특정주제에 관한 정보를 극대화하는 데 주 초점을 가지는 질적 연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유태균 역, 2001). 즉 신뢰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보완한다고 판단한다.

AHP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의 단계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한다. 첫 번째 제1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확립 두 번째 제2단계에서는 각 계층 내에서 의사결정 요소들간의 이원비교 셋째, 제3단계에서는 이원비교행렬로부터 의사결정 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도(eigen-value) 계산<sup>3)</sup> 넷째, 4단계에서는 계층구조의 종합화를 통한 대안들의 종합적 우선순위 결정이다(노화준, 2010). 그리고 이원비교에 대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구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이 10%(0.1)미만일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되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일관성 비율은 0.02에서 0.04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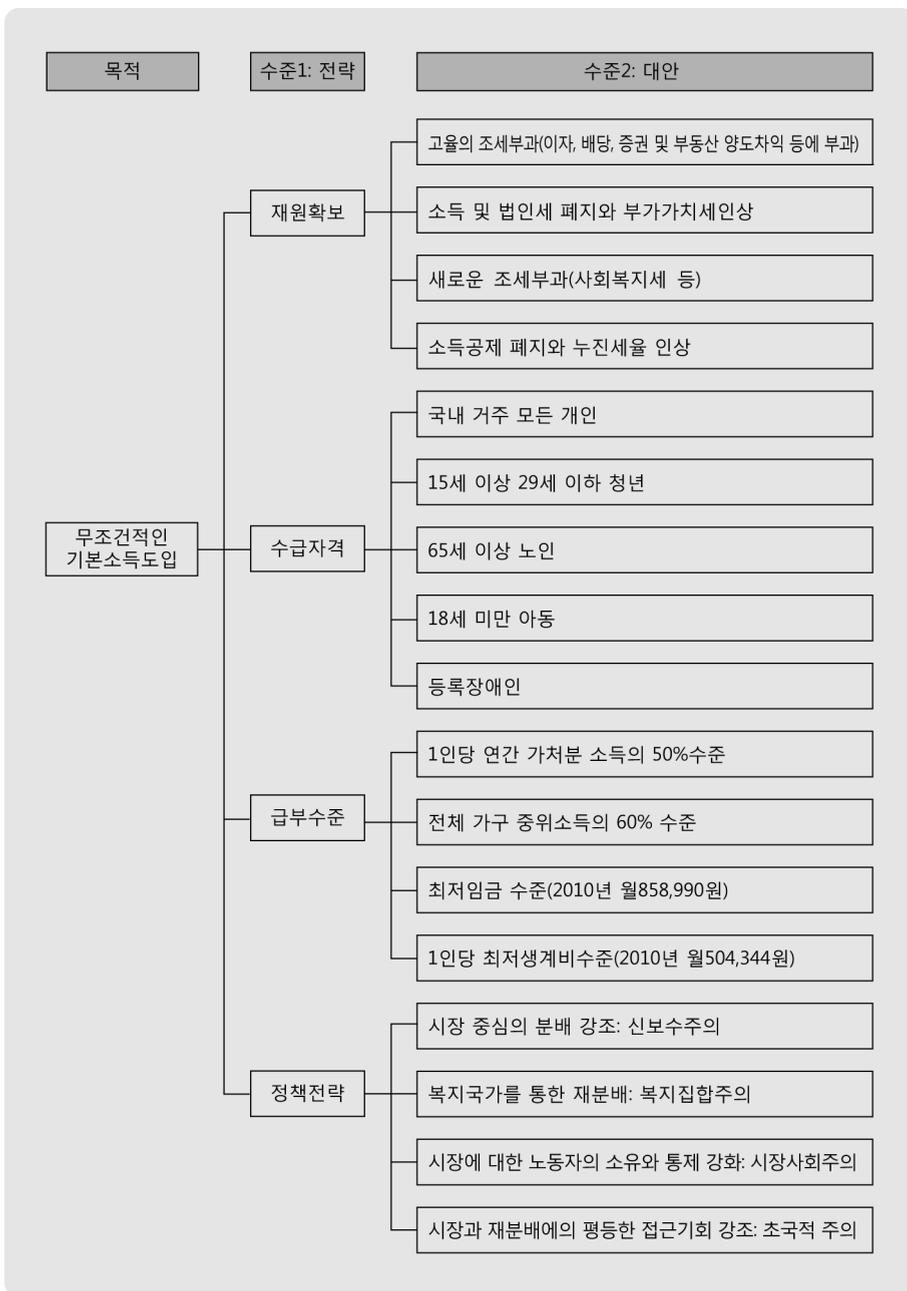
## 2. 계층구조의 구성

계층화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최종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속성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이를 다시 계층화하는 것이다. 이때 각 집합들은 수준(level)이라 하고 각 수준은 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계층화구조도의 작성을 위해 예비조사<sup>4)</sup>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발전시킨 계층화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최상위수준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고 제1수준은 최종목적에 대한 전략요소, 제2수준은 제1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요소이다. 무조건성에 기반한 기본소득도입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를 위해 제1수준에는 재원확보, 수급자격, 급부수준, 정책전략이 포함되었고, 제2수준에는 제1수준의 각 요인에 따른 선택가능한 대안요인들이 세분되었다.

3) 상대적 중요도는  $i$ 대안에 대한  $j$ 대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중요도의 차이가 크다.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연구자 3명, 일본의 기본소득관련 정책연구자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2. 기본소득의 계층화 구조도



## V. 연구결과

### 1. 한국 기본소득의 전략과 대안에 대한 평가

한국의 연구자들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소 중에서, 정책전략(.362)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어서 재원확보(.282), 수급자격(.180), 급부수준(.1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 4개의 전략요인에 관련된 대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2단계 결과를 보면, 첫째 재원확보에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5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격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485)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급부수준에는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56)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최저임금수준(.324)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전략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집합주의(.53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분석결과는 1단계의 이원비교를 통해 분석된 전략요인별 가중치를 각각의 세부 대안에 적용하여 전체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것이다. 분석결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대안 중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집합주의(.176)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137),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시장사회주의(.097),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087), 1인당최저생계비수준(.086), 최저임금수준(.078), 사회복지세, 토지세, 천연자원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062),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60%수준(.045),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강조하는 초국적주의(.04),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인상(.034), 1인당연간가처분소득의 50%수준(.033), 18세미만 아동(.028),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024), 65세 이상 노인(.022), 등록 장애인(.019),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인상(.015), 시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0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의 연구자들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방향에서 기본소득도입을 선호한다고 판단된다.

표 2. 한국 연구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목적	수준 1 (중요도: 순위)	수준 2 (중요도: 순위)	통합결과 (중요도: 순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입	재원확보 (.282:2)	고율의 조세부과(.549:1)	(.137:2)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인상(.066:4)	(.016:16)
		사회복지제 등 새로운 조세부과(.248:2)	(.062:7)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 인상(.137:3)	(.034:10)
	수급자격 (.180:3)	국내 거주 모든 개인(.485:1)	(.087:4)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133:3)	(.024:13)
		65세 이상 노인(.121:4)	(.022:14)
		18세 미만 아동(.155:2)	(.028:12)
		등록 장애인(.106:5)	(.019:15)
	급부수준 (.177:4)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의 50% 수준(.135:4)	(.033:11)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185:3)	(.045:8)
		최저임금 수준(.324:2)	(.078:6)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56:1)	(.086:5)
	정책전략 (.362:1)	시장중심의 분배강조: 신보수주의(.046:4)	(.015:17)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복지 집합주의(.536:1)	(.176:1)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강화: 시장사회주의(.296:2)	(.097:3)
시장과 재분배의 평등한 접근기회 강조: 초국적주의(.122:3)		(.04:9)	

## 2. 일본 기본소득의 전략과 대안에 대한 평가

일본의 연구자들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소 중에서, 수급자격(.432)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어서 급부수준(.323), 정책전략(.148), 재원확보(.0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 4개의 전략요인에 관련된 대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2단계 결과를 보면, 첫째 재원확보에는 소득공제 폐지와 누진세율 인상(.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격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369)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급부수준에는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13)이 가장 높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전략에서는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는 시장사회주의(.320)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복지집합주의(.317), 초국적주

의(.307)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분석결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대안 중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149)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1인당 최저생계비수준(.111),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105), 등록 장애인(.098), 18세 미만 아동(.076),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의 50%수준(.076), 최저임금수준(.063), 65세 이상 노인(.055),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집합주의(.051).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시장사회주의(.051),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강조하는 초국적주의(.049),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인상(.034),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026), 사회 복지세, 토지세, 천연자원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018),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017),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인상 (.012), 시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0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본 연구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목적	수준 1 (중요도: 순위)	수준 2 (중요도: 순위)	통합결과 (중요도: 순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도입	재원확보 (.097:4)	고율의 조세부과(.208:3)	(.017:15)
		소득 및 법인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인상(.154:4)	(.012:16)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조세부과(.224:2)	(.018:14)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 인상(.415:1)	(.034:12)
	수급자격 (.432:1)	국내 거주 모든 개인(.369:1)	(.149:1)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064:5)	(.026:13)
		65세 이상 노인(.136:4)	(.055:8)
		18세 미만 아동(.188:3)	(.076:5)
	급부수준 (.323:2)	등록 장애인(.243:2)	(.098:4)
		1인당 연간가처분 소득의 50% 수준(.214:2)	(.076:6)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295:2)	(.105:3)
		최저임금 수준(.178:4)	(.063:7)
	정책전략 (.148:3)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313:1)	(.111:2)
		시장중심의 분배 강조(.057:4)	(.009:17)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 복지집합주의(.317:2)	(.051:9)
		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와 통제 강화: 시장사회주의(.320:1)	(.051:9)
		시장과 재분배에의 평등한 기회강조: 초국적주의(.307:3)	(.049:11)

##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인식 비교를 통해 각국 단위에서의 기본소득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제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연구자들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전략을 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였다. 둘째, 일본의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떠한 수급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현금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의거하여, 한일 각국의 기본소득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재원확보방안으로는 금융 및 자산을 가진자에 대해 고율의 조세부과를 통해서, 수급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과 급부수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소득공제폐지와 누진세율인상을 통해서 기본소득제도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전략으로 시장사회주의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인식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정책전략과 복지집합주의를 가장 중요한 제도화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의 상대적 저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복지 확대의 수단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사회복지노선을 둘러싼 논쟁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복지논쟁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전략의 강조는 기본소득을 한국의 소득보장정책의 보

편성 확대의 유력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 보장이 연계된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수급자격과 급부수준의 결정을 가장 중요한 제도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일본의 기본소득 논의가 규범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어 나가는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규범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실제 정책계획 수립에 있어 그 초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기본소득이냐에 맞추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sup>5)</sup>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액 조세방식으로 충당하는 무조건 노령연금제도 제안이다. 현재 일본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을 포함하는 직역별·소득별 국민연금을 전액 소비세 방식의 공제연금(가칭)으로 전환하고 수급자격은 국내 거주 10년 이상 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소득에 따른 급부제한은 없으며,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 공적연금 공제제도를 축소하여 연금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급부를 억제하는 제안이다. 그리고 저소득자에게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감세율을 소비세에 도입하여 감세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의 고흥자 버전에 대한 진전된 논의라 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수당법을 둘러싼 실험과 좌절이다. 이 제안은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로 제시한 어린이 수당법에 기초한다. 중학교 졸업까지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액 26,000엔을 소득 제한 없이 지급하고, 비용은 소득세 부과에서 부양가족공제액 폐지를 재원으로 하는 전액국고부담 방식이다. 이 계획은 일본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이미 70년대 영국에서 도입된 아동급부(child benefit) 등 유럽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이 법안은 특정 인구학적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기본소득으로서 실현되었으나, 실제 급부액은 1만 3000엔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2010년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에 의한 경제복구 재원확보를 이유로 2011년 11월부터 폐지되어 이전의 소득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아동수당(3세 미만 15,000엔, 중학생까지 10,000엔)으로 복귀되었다. ③ 참가소득의 제안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참가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구상이 등장하고 있다. 2007년 일본 연합총합생활개발연구소 주최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복지거버넌

5) 사회복지지출 관련한 두 나라의 상황을 보면, 2007년 한국은 GDP 대비 7.5%이고 이에 반해 일본은 18.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19.3%에 대비할 때 일본의 수준은 평균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한국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Adema & Ladaique, 2009). 즉 기본소득의 재원, 건강, 소득 지원 등과 관련한 복지자원의 총량 수준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스 선언』에서 현대복지국가에의 새로운 길의 방안으로 참가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일본에서 참가소득 제안은 복지욕구의 고도화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와 케어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특히 사람들과의 연대가 해체되고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재생하려는 일환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소득보장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세계개혁에 대한 논의이다. 조세체계는 거의 우리와 유사하다. 개인의 소득에서 다양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차감되어 세액이 결정된다. 세율은 누진과세로 6단계(0.5~40%)로 구분되고 있다. 배당소득은 가산되지만 그 세율은 10%로 매우 낮다. 주식양도차익이나 이자소득은 원천 분리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자산가가 1,000만엔 이자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는 100만엔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소득세에 대한 적극적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수정과 대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인상, 소득세 과세대상을 비근로소득(이자수입 등)에까지 확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村岡 到, 2010). 이런 제안들은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구체적 적용 논의의 진행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집중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제도화요인 충족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앞으로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화에 대한 실용적인 담론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전략 및 대안에 대한 한일연구자들의 공통적 인식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즉 지리적으로 확대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시민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국적을 넘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계측에 필요한 통일된 지표를 합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일 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수준의 지급은 실현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로배당(Euro Dividend)과 같이 동북아시아 공통의 지역적 최저한 설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기본소득의 제도화요소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논의 및 검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 및 지역사회단위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관련된 급속한 여건변화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므로 전문분야별, 전문성정도나 특정성향의 편향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의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조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연구자들 인식의 공통성과 차이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의 경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전문연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것과,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연구자들의 인식을 그룹의사결정으로 분석하여, 각국단위 측면과 지역공동체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연구의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에는 기본소득 정책가정의 설정 즉 기존의 임노동모델과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하여, 기본소득이 일자리창출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정책과 배치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종착지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완전기본소득의 도입 과정은 Fitzpatrick의 지적처럼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특정한 대상에 집중된 보편적 수당의 확산과 함께 무조건성의 확대 경로를 통해 기본소득은 서서히 현실화될 것이다.

이명현은 부산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이며 현재 기본소득과 상호호혜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lh948@knu.ac.kr)

박경일은 부산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국대학교(경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과 가족수당이며, 현재 가족수당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E-mail: pki@dongguk.ac.kr)

강대선은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위덕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자원봉사이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논리구성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E-mail: dskang@uu.ac.kr)

## 참고문헌

---

- 강남훈(2010). 기본소득도입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45, pp.12-43.
- 강남훈, 광노완, 이수봉(2009).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의 대안을 말한다. 민주노총.
- 광노완(2007).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시대와 철학, 18(2), pp.183-218.
- 광노완(2008). 파레이스, 반유평가적 맑스주의의 유평가:파레이스에 대한 비판과 진형. 진보평론, 35, pp.93-119.
- 김교성(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 김형기(2007). 대안적발전모델-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 한울.
- 노회준(2010).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박흥규(2008). 기본소득연구. 민주법학, 36, pp.199-223.
- 백승호(2010).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185-212.
- 서정희, 조광자(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6(2), pp.33-57.
- 이명현(2006). 복지국가 재편의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구상. 사회복지연구, 22(3), pp.53-76.
- 이명현(2007).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 동향과 과제: 근로안식년과 시민연금 구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3(3), pp.147-169.
- 이명현, 강대선(2011).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2), pp.39-64.
- 이재영, 임운택(2006). AHP를 이용한 도시내 도로사업 평가모형 구축 및 중요도 인식특성 분석. 국토계획, 41(2), pp.227-236.
- 조정재(2007). 노동연계복지와 대안적 고용 노동모델. 김형기 엮음. 대안적 발전모델. 서울: 한울, pp.200-241.
- 龜山俊明(2002). 市民社會と新しい社會政策. 年報人間科學, 23(2), pp.229-245.
- 菊地英明(2006). ヲロッパにおけ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構想の展開. 海外社會保障研究, 157, pp.4-15.
- 福士正博(2006). 完全從事社會の可能性-仕事と福祉の新構想.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山森亮(2009). *ベーシックインカム入門*. 京都: 廣文社.
- 小沢修司(2002). *福祉社会と社会保障改革ーベーシックインカム構想の新天地*. 京都: 高管出版.
- 實原隆志(2007). 労働と福祉を分離する理論的可能性について. *長崎國際大學論叢*, 7, pp.143-153.
- 元田厚生(2008). ベシックインカム論争を前進させるために. *經濟と經營*, 39(1), pp.1-15.
- 田村哲樹(2008). *シテイズンシップとベーシックイン-シテイズンシップと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可能性*. 京都: 法律文化社.
- 齊藤純一(2001). *自由への問い1 社會統合*. 東京: 岩波書店.
- 中谷巖(2008). *資本主義はなぜ自壊したのか: 日本再生への提言*. 東京: 集英社.
- 村岡 到(2010).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で大転換*. 東京: ログス.
- 秋元美世(2008). シテイズンシップとベーシックインについての権利の理論: シテイズンシップと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可能性. 京都: 法律文化社.
- 浦川邦夫(2007). ベーシックインカム論に對する政治經濟學的考察. *國民經濟雜誌*, 196(6), pp.287-288.
- Ackerman, B., Alstott, A.(2006). *Why Stakeholding In Wright ed(2006), Ro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Alternative Cornerstones for a More Egalitarian Capitalism*. Verso.
- Adema, W., Ladaique, M.(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http://www.oecd.org>.
- Altenkamp, S.(2010). *Basic Income Guarantee,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Namibian BIG Experiment. Paper Presented at the Thirteenth BIEN Congress, June 30th to July 2nd, FEA-USP, Sau Paulo, Brazil.* pp.1-20.
- Atkinson, A. B.(Eds)(1995). *Income and Welfare State: Essays on the Britain and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 Ulrich(Eds)(2000). *The Brave New World of Work*. Cambridge: Polity Press.
- Deborah, K. P(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 and Rewards*. Calif: Sage Publication, Inc. 유태균(역). 2001.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
- Fitzpatrick, T.(Eds)(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Macmillan.
- Gorz, A.(Eds)(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d-Based Security*. Cambridge: Polity Press.
- Gutmann, A., Thompson, D.(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Why Moral Conflict can not be Avoided in Politics, and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The Bel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bermas, J.(Eds)(1992).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Kipping, K.(2008). *Moving to Basic Income-A left wing political perspective*. BIEN Congress, June 2008.
- Lipietz, Alain(Eds)(1992). *Towards a New Economic Order: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Miller, A. G.(2008). *Designing and Costing Simple Basic Income Schemes*. <http://www.basicincomeireland.org>에서 인출.
- Offe, C.(1996). The Acceptance and Legitimacy of Strategic Options in Social Policy. In Claus Offe(Eds), *Modernity and the State: East, West*.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s' Right and Economic Resources?. In *OECD, Societal Cohesion and Globalis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pielka, Michael(2010).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http://www.fljs.org>에서 인출.
- Standing, G.(2009).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MA: Edward Elgar.
- Van Parijs, P.(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Clarendon Press.

Wilson, S.(2004). *The struggle over Work : The End of 'Work' and Employment Alternatives for Post-industrial Societ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An Expert Evaluation Study of Basic Income Protection Schemes in Korea and Japan

**Lee, Myoung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ark, Kyungil**

(Dongguk University)

**Kang, Daesun**

(Uiduk University)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for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surveyed on the perception of 6 Korean researchers and 4 Japanese researchers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respondents' perceived weight among the each elements and alternatives in the research model. The Korean researchers were found to view national political regime as the most important base for a basic income prot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supported collectivist-redistributionist policy. They also preferred a higher tax on interest, dividend, stocks etc, and thought that redistributiv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an amount equal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ll Korean residents. The Japanese researchers thought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and the benefit level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common factors running through both countries include residence-based universal entitlement and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e authors in this study discussed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protection.

---

**Keywords:** Basic Income, Unconditionality, Sufficiency, AHP